

출판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표권'

출판사명, 시리즈명, 책제목 등 상표등록으로 권리 보호받을 수 있어

법적인 무지가 때로는 출판인들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있었던 '뛰어넘기' 상표권 분쟁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과자·음료·의류 등 공산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표권이 서적의 제목에까지 미친 경우다.

‘뛰어넘기’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이는 97년 4월 일본어교재 출판사인 일본 어뱅크에서 상표등록한 '뛰어넘기'를 책제목에 사용한 한울림, 더난출판사, 예가 등 여섯곳에 '상표권 침해금지 통고'를 보냄으로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어뱅크는 이미 96년에 영진출판사, 한샘, 정보시대 등으로 부터는 합의금을 받고 통상사용권을 허락한 상태였다.

그러나 《맛별이 부부의 아이교육 뛰어넘기》와 《유통개방 뛰어넘기》를 각각 펴낸 한울림, 더난출판사 등은 “'뛰어넘기'라는 상표권이 단행본의 제호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일본어뱅크측은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형사고발함으로써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특히 한울림의 송주한 대표는 관련출판사들과 공동대응해 '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실패하고 각 출판사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을 밟았다.

결국 송주한 대표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사건 결과 혐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더난출판사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취소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갔다. 현재까지 '뛰어넘기'라는 상표권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로 있다.

분쟁에 휘말렸던 출판사들은 이를 계기로 우리 출판계에서 저작권 못지 않게 상표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난 출판사의 김구정 편집장은 “법적 무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상표권 등록 표시인 ®이 찍힌 상품들. 출판계에도 상표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행 법률상 상표법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과 함께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유지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출판사의 경우는 출판행위라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표와 관련되고, 출판사 상호, 책제목이나 시리즈명, 도안·로고 등은 상표와 연관된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몇몇 출판사들은 상표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국내 출판물의 경우 단행본은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문예출판사), 전집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명》(동서문화사), 잡지로는 《여학생》(여학생사)이 최초로 제호를 상표등록한 경우다. 박영사는 대학교재의 표지를 의장등록한 특이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상표등록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타상품 식별력'이다. 즉, '라이터'라는 상표는 이미 보통명사화한 경우이며, '아스피린', '나일론' 등은 원래는 상표였으나 보통명칭화한 경우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슈퍼', '좋은' 등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어린이용' 등 용도를 표시하는 상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 등 선행상표가 없어야 한다.

상표등록해야 권리 지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표를 선정해 상품(서비스업)을

검색이 자유로운 <고종순종실록 CD롬>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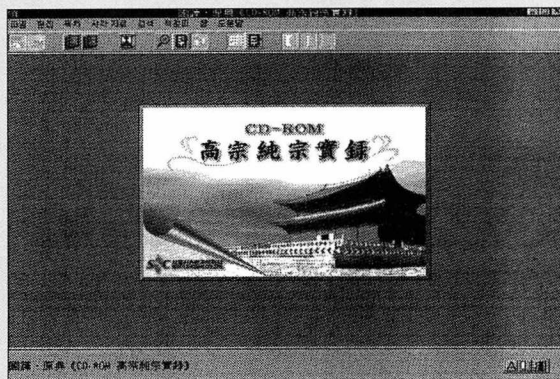
원전과 국역본 함께 수록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완결판인 《고종순종실록》이 CD롬으로 탄생했다.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CD롬에 수록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던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는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작업을 완성하여 이미 출시했다(본지 180호 참조). 《고종순종실록》은 국역되지 않았던 2대 왕조실록을 보완하여 선보인다.

이번 CD롬에 수록된 실록은 2대 왕조 63년간의 사실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술(記述)·체제·편책의 방법에 따라 기술한 역사서이다. 순종 사후 8년에 걸쳐 모두 74권 60책 3,781장으로 편찬되었다. 발간사업을 책

입진 서울시스템(회장 이웅근)은 “역사·국문·한문학과 현직 교수, 전문위원 등의 사학계의 전문가 40여명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실록의 번역과 원전을 정리하여 수록했다”고 밝혔다.

원전과 국역본을 함께 수록한 CD롬은 세계 각국과의 조약문, 관계개편, 관직의 임명과 해임, 각사 각영의 회계부, 재변(災變), 진대(賑貸)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약조 등의 원문을 전제하고 조서·칙령·법률·각령·부령 등을 망라한다. 연대 목차 검색을 선택하면 편찬체 역사



서인 실록이 고종즉위에서부터 연대별 코드로 나열된다. 단어 검색도 가능하다. '명성황후'를 입력했을 경우 국역본문·국역제목·한문원문의 3가지 범위 안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참조 기능을 활용하면 국역본과 원전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은 기관용 4백만원, 개인용 2백만원. <오완진>

어려울 때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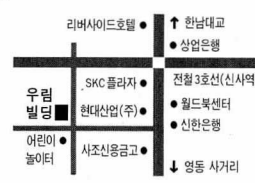
생각나는 친구

호황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불황의 그림자는 출판계에만
늘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좀더 효율적인 전문 인력으로서
저희가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연'은 단행본의 레이아웃과 교정에서부터
잡지, 아동물, 카탈로그 등 디자인 개념이 요구되는
각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지정하여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한 후 출원공고를 한
다. 이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사정을 거쳐 특허청
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10년간 유효한 상표
권이 발생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등록된 상표는 ®이나 '등록상표'라고 표시
한다. 보통 상표등록하는 데는 1년의 기간이
걸린다.

만일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을 등록
했다면 상표권의 범위가 유사한 제목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출원인이 다를 경우 '사랑의
기교', '사랑의 예술' 등의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는 유
사상표를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을 거쳐 상표권을 보유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민사상 침해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
권과 형사상 고소를 통해 5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
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상표법이 수요
자 보호와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가 강하기 때문이다.

책 제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례가 참
조할 만하다. 1992년 등록상표 '주간만화'의
상표권이 서적에 사용된 《주간만화》에 효력이
미치지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즉 “《주간만화》는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을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
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주간만화'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모든 경우에 미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판사명, 시리즈명, 책제목 등 상표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상
표등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도하지 않
게 다른 사람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이
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상표법에서는 어떤 상표를 먼저 사
용하고 있다고 해도 상표권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록해야 권

상표법이란 무엇인가

상표법 관련 법규 조항

제2조 정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
한 것 포함)을 말한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
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缺)예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
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
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 포함)·가
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
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
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운 변리사는 “이제 출판인들도 상표권이
출판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
하고 무형의 정신적 자산을 보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박천홍 기자